

원산지결정기준 개정표(2023ver.)

개정년월 : 2023. 6.

1.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머리말	우리나라는 현재 58개국과 18개 협정이 발효 되었으며, 2021년 1월1일 에 한-영 FTA, 2021년 3월 1일에는 한-중미 FTA 전체가 발효되었다. 2022년에는 RCEP이 발효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포남방 국가들과의 FT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1개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21년 1월1일 에 한-영 FTA, 2021년 3월 1일에는 한-중미 FTA 전체가 발효되었다. 2022년에는 RCEP,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었고, 2023년 1월 1일에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었다.	신규 발효 협정 추가 한-인니 FTA-> CEPA로 수정
머리말	본 교재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발효한 18개 협정 및 한-인도네시아 CEPA(미발효) 등 총 19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이해 하기 쉽게 협정별로 정리 및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아직 협 정문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한-이스라엘 FTA는 내용이 제외되었다.	본 교재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발효한 21개 협정 및 한-인도네시아 CEPA(미발효) 등 총 19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이해 하기 쉽게 협정별로 정리 및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아직 협 정문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한-이스라엘 FTA는 내용이 제외되었다.	내용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8p 하단 표	\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체계 \		이슬라엘, 캄보디아 추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국 제 법</th><th colspan="2">국 내 법</th></tr><tr><th>FTA 특혜</th><th>일반특혜</th><th>FTA 특혜</th><th>일반특혜</th></tr><tr><td>특혜 원산지규정</td><td>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미 FTA • 한-페루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 한-영 FTA • RCEP • 한인도네시아 CEPA </td><td> •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 정 (APTA) • WTO 개도국 간 협 정 (TNDC) • UN 개도국 간 협 정 (GSTP) </td><td> •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td><td>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td></tr><tr><td>비특혜 원산지규정</td><td colspan="2">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td><td colspan="2">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 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td></tr></table>			구분	국 제 법		국 내 법		FTA 특혜	일반특혜	FTA 특혜	일반특혜	특혜 원산지규정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미 FTA • 한-페루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 한-영 FTA • RCEP • 한인도네시아 CEPA	•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 정 (APTA) • WTO 개도국 간 협 정 (TNDC) • UN 개도국 간 협 정 (GSTP)	•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비특혜 원산지규정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 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구분	국 제 법		국 내 법																			
	FTA 특혜	일반특혜	FTA 특혜	일반특혜																		
특혜 원산지규정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미 FTA • 한-페루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 한-영 FTA • RCEP • 한인도네시아 CEPA	•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 정 (APTA) • WTO 개도국 간 협 정 (TNDC) • UN 개도국 간 협 정 (GSTP)	•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비특혜 원산지규정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 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체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국 제 법</th><th colspan="2">국 내 법</th></tr><tr><th>FTA 특혜</th><th>일반특혜</th><th>FTA 특혜</th><th>일반특혜</th></tr><tr><td>특혜 원산지규정</td><td>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미 FTA • 한-페루 FTA • 한-튀르키예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 한-영 FTA • RCEP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td><td> •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 정 (APTA) • WTO 개도국 간 협정(TNDC) • UN 개도국간 협정(GSTP) </td><td> •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td><td>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td></tr><tr><td>비특혜 원산지규정</td><td colspan="2">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td><td colspan="2">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 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td></tr></table>	구분	국 제 법		국 내 법		FTA 특혜	일반특혜	FTA 특혜	일반특혜	특혜 원산지규정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미 FTA • 한-페루 FTA • 한-튀르키예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 한-영 FTA • RCEP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 정 (APTA) • WTO 개도국 간 협정(TNDC) • UN 개도국간 협정(GSTP)	•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비특혜 원산지규정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 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구분	국 제 법			국 내 법																		
	FTA 특혜	일반특혜	FTA 특혜	일반특혜																		
특혜 원산지규정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미 FTA • 한-페루 FTA • 한-튀르키예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 한-영 FTA • RCEP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 정 (APTA) • WTO 개도국 간 협정(TNDC) • UN 개도국간 협정(GSTP)	• FTA 관세특례법·령·시행규칙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비특혜 원산지규정	•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 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슬라엘,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9p	우리가 맺은 19개 협정에서 원산지상품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원산지재료생산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맺은 21개 협정 에서 원산지상품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원산지재료생산품으로 나눌 수 있다.	
10p 하단 각주	6) 2022년 2월 기준 발효 협정은 18개 이며, 한-인도네시아 CEPA는 미 발효	6) 2022년 2월 기준 발효 협정은 18개 이며, 한-인도네시아 CEPA는 미 발효	각주 6 내용 삭제
16p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영역에 포함시켜 완전 생산기준을 충족 여부를 따질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영역에 포함시켜 완전 생산기준 충족 여부를 따질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불필요한 조사 제거
17p	협정별로 우리나라 영역을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싱가포르, EFTA,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며,	협정별로 우리나라 영역을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싱가포르, EFTA,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며,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17p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뉴질랜드영역에서 토켈라우가 제외된다.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뉴질랜드 영역에서 토켈라우가 제외된다.	띄어쓰기
21p	협정별로 완전 생산품 판정 시 상대국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협정과 협정당사국 1개국만 인정하는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정별로 완전 생산품 판정 시 상대국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협정과 협정당사국 1개국만 인정하는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타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1p	인도네시아 <제1.1조>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토, 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및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에 정의되고 1982년 12월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캄보디아 <제1.1조>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왕국의 영역 이스라엘 <제1.6조> 1.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 2.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영역에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제1.1조>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토, 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및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에 정의되고 1982년 12월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1p	<table><tr><th>일방 또는 양당사국</th><th>당사국(자)</th></tr><tr><td>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td><td>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td></tr></table>		일방 또는 양당사국	당사국(자)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	<table><tr><th>일방 또는 양당사국</th><th>당사국(자)</th></tr><tr><td>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td><td>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영국·RCEP·캄보디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td></tr></table>		일방 또는 양당사국	당사국(자)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영국·RCEP·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일방 또는 양당사국	당사국(자)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												
일방 또는 양당사국	당사국(자)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영국·RCEP·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												
22p	<table><tr><td>한-인도네시아</td><td>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td></tr></table>		한-인도네시아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table><tr><td>한-캄보디아</td><td>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td></tr><tr><td>한-이스라엘</td><td>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td></tr><tr><td>한-인도네시아</td><td>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td></tr></table>		한-캄보디아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한-이스라엘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한-인도네시아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한-인도네시아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한-캄보디아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한-이스라엘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한-인도네시아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3p	<table><tr><td>인도네시아</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그 밖의 천연자원</td></tr></table>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그 밖의 천연자원	<table><tr><td>캄보디아</td><td>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td></tr><tr><td>이스라엘</td><td>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td></tr><tr><td>인도네시아</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td></tr></table>		캄보디아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이스라엘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그 밖의 천연자원												
캄보디아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이스라엘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24p	<table><tr><td>인도네시아</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td></tr></table>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table><tr><td>캄보디아</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td></tr><tr><td>이스라엘</td><td>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td></tr><tr><td>인도네시아</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td></tr></table>		캄보디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이스라엘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캄보디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이스라엘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25p	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해당국가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 부터 「획득」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의 협정은 해당국가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 부터 「획득」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6p	<table><tr><th colspan="2">출생 + 사육 + 획득</th><th>사육 + 획득</th><th>획득</th></tr><tr><td colspan="2">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td><td rowspan="2">EU·영국·RCEP</td><td rowspan="2">미국</td></tr><tr><td colspan="2">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인도 네시아</td></tr></table>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		EU·영국·RCEP	미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인도 네시아		<table><tr><th colspan="2">출생 + 사육 + 획득</th><th>사육 + 획득</th><th>획득</th></tr><tr><td colspan="2">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td><td rowspan="2">EU·영국·RCEP</td><td rowspan="2">미국</td></tr><tr><td colspan="2">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캄보디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td></tr></table>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		EU·영국·RCEP	미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		EU·영국·RCEP	미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인도 네시아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EFTA·아세안·인도·터키·페루·호주·캐나다		EU·영국·RCEP	미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																											
26p	뉴질랜드	다.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된 상품		뉴질랜드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다. 라. 삭제																				
27p	<table><tr><td>중미</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td></tr><tr><td>인도네시아</td><td>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td></tr></table>			중미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table><tr><td>중미</td><td>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한 상품</td></tr><tr><td>RCEP</td><td>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td></tr><tr><td>캄보디아</td><td>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td></tr><tr><td>이스라엘</td><td>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위 다호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td></tr><tr><td>인도네시아</td><td>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td></tr></table>			중미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한 상품	RCEP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캄보디아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이스라엘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위 다호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	인도네시아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획득한 물품에 대한 설명에서 가, 나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가, 나 등 삽입 (중미,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이스라엘 내용 추가						
중미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중미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 한 상품																										
RCEP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캄보디아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이스라엘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위 다호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																										
인도네시아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27p	아세안·미국·EU·인도·페루·터키·호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 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양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미국·EU·인도·페루·터키·호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 중미·영국·RCEP·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양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7p	수렵·뿔사냥·어로(어업) 칠레·싱가포르·EFTA·캐나다		수렵·뿔사냥·어로(어업)·양식 아세안·미국·EU*·터키*·영국*·인도·호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페루** 중미·RCEP·인도네시아	수렵·뿔사냥·어로(어업) 칠레·싱가포르·EFTA·캐나다		수렵·뿔사냥·어로(어업)·양식 아세안·미국·EU*·터키*·영국*·인도·호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페루** 중미·RCEP·캄보디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28p	아세안·미국·인도·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 중미·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역외산 치어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양식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			아세안·미국·인도·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역외산 치어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양식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29p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뿔사냥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캄보디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이스라엘	당사국의 육지,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수집,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뿔사냥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30p	당사국 국기계약 EFTA	당사국 등록 + 당사국 국기계약 + 소유요건 EU·터키·영국	당사국 등록 + 당사국 국기계약 칠레·싱가포르·아세안·미국·인도·페루·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콜롬비아·중국·중미·RCEP·인도네시아	당사국 국기계약 EFTA	당사국 등록 + 당사국 국기계약 + 소유요건 EU·터키·영국	당사국 등록 + 당사국 국기계약 칠레·싱가포르·아세안·미국·인도·페루·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콜롬비아·중국·중미·RCEP·캄보디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1p	인도네시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이스라엘 아. 당사국의 선박에 의해서만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취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상품 자. 아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상품 제1항아호 및 자호의 “당사국의 선박”과 “당사국의 가공선박”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의 법에 합치되게 그 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33p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34p	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금지 규정이 없으나, 후술하는 역내가공 원칙에 의하여 역외가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세안·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금지 규정이 없으나, 후술하는 역내가공 원칙에 의하여 역외가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캄보디아 추가																						
34p	<table><thead><tr><th colspan="2">FTA</th><th>주 요 내 용</th></tr></thead><tbody><tr><td rowspan="2">우주 취득물품 완전생산 규정 협정</td><td>칠레·싱가포르·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td><td>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td></tr><tr><td>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td><td>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td></tr><tr><td>미규정 협정</td><td>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 EP</td><td>완전생산 규정 없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야함</td></tr></tbody></table>	FTA		주 요 내 용	우주 취득물품 완전생산 규정 협정	칠레·싱가포르·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	미규정 협정	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 EP	완전생산 규정 없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야함	<table><thead><tr><th colspan="2">FTA</th><th>주 요 내 용</th></tr></thead><tbody><tr><td rowspan="2">우주 취득물품 완전생산 규정 협정</td><td>칠레·싱가포르·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td><td>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td></tr><tr><td>아세안·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td><td>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td></tr><tr><td>미규정 협정</td><td>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 EP·이스라엘</td><td>완전생산 규정 없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야함</td></tr></tbody></table>	FTA		주 요 내 용	우주 취득물품 완전생산 규정 협정	칠레·싱가포르·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아세안·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	미규정 협정	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 EP· 이스라엘	완전생산 규정 없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야함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FTA		주 요 내 용																							
우주 취득물품 완전생산 규정 협정	칠레·싱가포르·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																							
미규정 협정	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 EP	완전생산 규정 없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야함																							
FTA		주 요 내 용																							
우주 취득물품 완전생산 규정 협정	칠레·싱가포르·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아세안·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될 것																							
미규정 협정	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 EP· 이스라엘	완전생산 규정 없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야함																							
34p	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과의 협정 및 RCEP은 우주 취득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완전생산품으로 분류되어 품목별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EFTA·EU·인도·터키·페루·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 이스라엘 과의 협정 및 RCEP은 우주 취득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완전생산품으로 분류되어 품목별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6p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캄보디아 다음의 상품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당사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인도네시아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37p	EFTA·아세안·페루·EU·터키·중국·베트남·중미·영국·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완전 생산품으로 만든 물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EFTA·아세안·페루·EU·터키·중국·베트남·중미·영국· 캄보디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 와의 협정은 완전 생산품으로 만든 물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37p	인도네시아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캄보디아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이스라엘 위 가호부터 차호까지에서 명시된 상품으로만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인도네시아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8p	완전생산품의 경우 수순한 당사국 원재료로 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완전생산품의 경우 순수 한 당사국 원재료로 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타 수정
40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2조 원산지 기준>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캄보디아 FTA <제3.2조 원산지 기준>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이스라엘 FTA <제3.12조 영역 원칙> 1. 제3.2조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2조 원산지 기준>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41p	미국·EU·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중미·영국과의 FTA는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EU·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중미·영국과의 FTA는 「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유지 (이스라엘 추가 없음)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1p	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페루·중국·베트남·콜롬비아와의 역외가공 규정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페루·중국·베트남·콜롬비아· 캄보디아·이스라엘·인도네시아 와의 FTA는 역외가공 규정을 두고 있다.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협정중 특이사항은 인도네시아와 협정은 협정문상 세부 역외가공 이행사항을 정하지 않고, 한-아세안 FTA 조항을 그대로 원용·수용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스라엘과의 FTA는 역외가공을 “양당사국 허용되는 방식”과 “한국만 허용되는 방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양당사국 허용되는 방식”은 협정에서 구체적 이행 방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만 허용되는 방식”은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를 통해 추후 이행 방법을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후술 되는 한-이스라엘 FTA 역외가공 규정은 “양당사국 허용되는 방식”의 내용이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42p	아세안·인도·페루·콜롬비아·베트남과의 FTA의 경우 개성공단에 한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므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역외가공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없다.	아세안·인도·페루·콜롬비아·베트남·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와의 FTA의 경우 개성공단에 한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므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역외가공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추가
42p	싱가포르와의 FTA는 허용지역 제한이 없는 품목과 개성공단으로 한정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EFTA와의 협정은 허용지역의 제한이 없다.	싱가פור는 허용지역 제한이 없는 품목과 개성공단으로 한정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EFTA· 이스라엘 과의 협정은 허용지역의 제한이 없다.	이스라엘 추가
42p	역외가공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협정별에서 지정한 특정 품목에 대해 허용된다. 다만 한-EFTA FTA는 역외에서 창출되는 가공비가 10% 이하를 요구하는 요건은 품목에 제한이 없으나, 역외에서 비원산지투입요소 비율이 최종제품의 가격에서 40%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품목은 267개로 부속서 1의 부록 4에 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외가공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협정별에서 지정한 특정 품목에 대해 허용된다. 다만 한-EFTA FTA는 역외에서 창출되는 가공비가 10% 이하를 요구하는 요건은 품목에 제한이 없으나, 역외에서 비원산지투입요소 비율이 최종제품의 가격에서 40%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품목은 267개로 부속서 1의 부록 4에 지정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FTA의 “양 당사국 허용되는 방식”은 허용 품목에 제한이 없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3p	아세안·인도·중국과의 FTA에서는 최종제품의 가격(FOB)에서 비원산지 요소 투입비율이 40% 이하일 것과 역외가공품의 총 재료비에서 원산지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아세안·인도·중국·인도네시아와의 FTA에서는 최종제품의 가격(FOB)에서 비원산지요소 투입비율이 40% 이하일 것과 역외가공품의 총 재료비에서 원산지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오타 수정, 인도네시아 추가
43p	베트남과의 FTA는 최종제품의 가격(FOB)에서 비원산지 투입요소 비율이 40% 이하일 것만을 요구한다.	베트남·캄보디아와의 FTA는 최종제품의 가격(FOB)에서 비원산지 투입요소 비율이 40% 이하일 것만을 요구한다.	캄보디아 추가
43p	베트남과의 FTA는 최종제품의 가격(FOB)에서 비원산지 투입요소 비율이 40% 이하일 것만을 요구한다. 끝으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협정에서 싱가포르와의 FTA를 제외하고 역외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역외가공품임을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캄보디아와의 FTA는 최종제품의 가격(FOB)에서 비원산지 투입요소 비율이 40% 이하일 것만을 요구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은 재수입된 역외가공품이 최초로 수출된 원재료와 HS 6단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역외에서 발생한 총 부가가치 ²²⁾ 가 최종제품의 가격(공장도가격)의 10% 이하일 것과 PSR(품목별원산지기준) 충족도 함께 요구한다. 끝으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협정에서 싱가포르와의 FTA를 제외하고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역외가공품임을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 제3.12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부가가치"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 비용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가 포함된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4p	<table><tr><td>아세안</td></tr><tr><td>OP</td></tr><tr><td>개성 공단</td></tr><tr><td>아세안 국별 100품목</td></tr><tr><td>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td></tr><tr><td>역외가공물품의 총 재료비 중 60% 이상</td></tr><tr><td>비적용</td></tr><tr><td>세관 발급 Rule 6 표시</td></tr></table>	아세안	OP	개성 공단	아세안 국별 100품목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역외가공물품의 총 재료비 중 60% 이상	비적용	세관 발급 Rule 6 표시	<table><tr><td>아세안, 인도네시아</td></tr><tr><td>OP</td></tr><tr><td>개성 공단</td></tr><tr><td>아세안 국별 100품목</td></tr><tr><td>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td></tr><tr><td>역외가공물품의 총 재료비 중 60% 이상</td></tr><tr><td>비적용</td></tr><tr><td>세관 발급 Rule 6 표시</td></tr></table> <table><tr><td>캄보디아</td></tr><tr><td>OP</td></tr><tr><td>개성공단</td></tr><tr><td>100품목</td></tr><tr><td>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td></tr><tr><td>-</td></tr><tr><td>비적용</td></tr><tr><td>제3.5조</td></tr></table>	아세안, 인도네시아	OP	개성 공단	아세안 국별 100품목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역외가공물품의 총 재료비 중 60% 이상	비적용	세관 발급 Rule 6 표시	캄보디아	OP	개성공단	100품목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	비적용	제3.5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추가
	아세안																										
	OP																										
	개성 공단																										
	아세안 국별 100품목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역외가공물품의 총 재료비 중 60% 이상																										
	비적용																										
	세관 발급 Rule 6 표시																										
	아세안, 인도네시아																										
OP																											
개성 공단																											
아세안 국별 100품목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역외가공물품의 총 재료비 중 60% 이상																											
비적용																											
세관 발급 Rule 6 표시																											
캄보디아																											
OP																											
개성공단																											
100품목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																											
비적용																											
제3.5조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4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th>캄보디아</th><th>이스라엘*</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적용 방식</td><td>OP</td><td>OP</td></tr> <tr> <td colspan="2">허용지역</td><td>개성 공단</td><td>모든 지역, 양당사국 적용</td></tr> <tr> <td colspan="2">적용대상 품목</td><td>100 품목</td><td>제한 없음</td></tr> <tr> <td rowspan="2">역외 가공 별도 원산지 기준</td><td>비 원산지 투입 요소의 비율</td><td>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td><td>최종 제품의 공장도가거 10% 이하**</td></tr> <tr> <td>수출 원산지 재료비의 비율</td><td>-</td><td>-</td></tr> <tr> <td colspan="2">품목별 원산지 기준 동시 충족 여부</td><td>비적용</td><td>적용</td></tr> <tr> <td colspan="2">C/O 요건</td><td>제3.5조</td><td>"OP"표시</td></tr> </tbody> </table> *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상 한국만 허용되는 역외가공 규정은 추후 한반도 역외가 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수입된 역외가공품이 최초에 수출된 원재료와 HS 6단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함	구 분		캄보디아	이스라엘*	적용 방식		OP	OP	허용지역		개성 공단	모든 지역, 양당사국 적용	적용대상 품목		100 품목	제한 없음	역외 가공 별도 원산지 기준	비 원산지 투입 요소의 비율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최종 제품의 공장도가거 10% 이하**	수출 원산지 재료비의 비율	-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동시 충족 여부		비적용	적용	C/O 요건		제3.5조	"OP"표시	이스라엘 내용 추가
구 분		캄보디아	이스라엘*																															
적용 방식		OP	OP																															
허용지역		개성 공단	모든 지역, 양당사국 적용																															
적용대상 품목		100 품목	제한 없음																															
역외 가공 별도 원산지 기준	비 원산지 투입 요소의 비율	최종 제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	최종 제품의 공장도가거 10% 이하**																															
	수출 원산지 재료비의 비율	-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동시 충족 여부		비적용	적용																															
C/O 요건		제3.5조	"OP"표시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53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5조 특정상품의 취급> 1. 특정상품의 취급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와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2009년 2월 27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그 교환각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취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은 제1항에서 언급된 교환각서에 첨부된 상품 목록이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상기 언급된 상품 목록을 추가 교환각서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한다.	한-캄보디아 FTA <제3.5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반도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진 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속서 3-나 특정 상품의 취급> 1.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7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으로 재수입되고, 제7항에 언급된 목록과 후속 개정에 반영된, 제3.5조에 언급된 “특정 상품”은 그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¹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의 관련 규정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제3.5조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²이 발급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그 상품에 제3.5조가 적용됨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한다. 다.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는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라. 한국은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에 따라 캄보디아 관세행정기관이 제3.5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1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한국과 캄보디아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2 한국의 경우,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발급 당국”이란 한국 관세행정기관을 말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한쪽 당사국이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그러한 조건하에 그 당사국의	캄보디아, 이스라엘 협정문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3.5조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어야 한다. 라.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5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전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3.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4. 연례 검토 가.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수출 당사국은 이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한 제7항에 나열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한다. 나. 공동위원회는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5. 분쟁해결 이 부속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8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6.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5.2조(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상품 목록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하게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한-이스라엘 FTA <제3.12조 영역 원칙> 1. 제3.2조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 될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 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 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재료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3.6조에서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하고,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1)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2) 그러한 작업 또는 가공이 그 재수입된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에서 세번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3)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획득된 총부가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치⁵는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제3항의 규정이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관한 사실 정보가 부속서 3-다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4.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부가가치”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비용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 재료의 가치가 포함된다. 나. 각주 5가호에 기술된 총부가가치는 제3.4조제1항의 목적상 비원산지 지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 3.12조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에 회합하며, 그 후 최소 매년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원산지 최종상품의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5조 특정상품의 취급> 1. 특정상품의 취급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와 제 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2009년 2월 27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그 교환각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취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은 제1항에서 언급된 교환각서에 첨부된 상품 목록이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상기 언급된 상품 목록을 추가 교환각서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한다.								
55p	<table> <tr> <th>불인정공정 규정 협정</th> <th>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th> </tr> <tr> <td>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td> <td>미국 :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td> </tr> </table>	불인정공정 규정 협정	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미국 :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	<table> <tr> <th>불인정공정 규정 협정</th> <th>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th> </tr> <tr> <td>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td> <td>미국 :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td> </tr> </table>	불인정공정 규정 협정	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미국 :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불인정공정 규정 협정	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미국 :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										
불인정공정 규정 협정	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미국 :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										
56p	다만 EFTA·아세안·인도·EU·터키·페루·베트남·콜롬비아·중미·영국·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단순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EFTA·아세안·인도·EU·터키·페루·베트남·콜롬비아·중미·영국·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단순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68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한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한-캄보디아 FTA <제3.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²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³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너. 동물의 도살⁴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³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너. 동물의 도살⁴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단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한-이스라엘 FTA <제3.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단순한²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² 페인팅 및 광택 공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바.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한² 분쇄 또는 단순한²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다.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²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단순한² 시험 또는 측정 하.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한²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² 포장 공정 거.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²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너.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³ 더. 동물의 도살, 또는 러. 위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2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단순한 혼합”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7조 불인정 공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한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를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너. 동물의 도살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73p	<table> <tr> <th>유럽형(16개 협정)</th> <th>미주형(3개 협정)</th> </tr> <tr> <td>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td> <td>칠레·미국·캐나다</td> </tr> </table>	유럽형(16개 협정)	미주형(3개 협정)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	칠레·미국·캐나다	<table> <tr> <th>유럽형(18개 협정)</th> <th>미주형(3개 협정)</th> </tr> <tr> <td>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RCEP·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td> <td>칠레·미국·캐나다</td> </tr> </table>	유럽형(18개 협정)	미주형(3개 협정)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칠레·미국·캐나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유럽형(16개 협정)	미주형(3개 협정)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RCEP·인도네시아	칠레·미국·캐나다										
유럽형(18개 협정)	미주형(3개 협정)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칠레·미국·캐나다										
73p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나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협정” 모두 물품이 “ 직접 운송” 되었을 경우 협정적용에 문제가 없다.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나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협정” 모두 물품이 “ 직접 운송” 되었을 경우 협정적용에 문제가 없다.	오타 수정								
74p	유럽형 협정은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 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이다.	유럽형 협정은 싱가포르·아세안·인도·EFTA·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영국·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이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75p	<table><tr><td>RCEP</td><td>○</td><td>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td><td>○</td><td>-</td><td>○</td></tr></table>						RCEP	○	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	○	-	○	<table><tr><td>RCEP</td><td>○</td><td>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td><td>○</td><td>-</td><td>○</td></tr><tr><td>캄보디아</td><td>○</td><td>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td><td>○</td><td>-</td><td>○</td></tr><tr><td>이스라엘</td><td>○</td><td>하역·재선적·상품 보존 필요공정</td><td>○</td><td>- 단일 탁송화물만 허용 - 비당사국 거래·소비·사용 금지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서류 ※ 비당사국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 상품의 정확한 설명,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능력과 장악 상품 상태 등을 포함한서류</td><td>×</td></tr></table>						RCEP	○	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	○	-	○	캄보디아	○	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	○	-	○	이스라엘	○	하역·재선적·상품 보존 필요공정	○	- 단일 탁송화물만 허용 - 비당사국 거래·소비·사용 금지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서류 ※ 비당사국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 상품의 정확한 설명,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능력과 장악 상품 상태 등을 포함한서류	×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RCEP	○	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	○	-	○																																
RCEP	○	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	○	-	○																																
캄보디아	○	하역·재선적·보관·상품 보존 필요공정	○	-	○																																
이스라엘	○	하역·재선적·상품 보존 필요공정	○	- 단일 탁송화물만 허용 - 비당사국 거래·소비·사용 금지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서류 ※ 비당사국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 상품의 정확한 설명,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능력과 장악 상품 상태 등을 포함한서류	×																																
75p	통과선하증권은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 이다.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경유지,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을 말한다.						통과선하증권 정의 및 주석 번호 수정																								
78p	일부 협정에서 제3국(비당사국) 경유 환적 시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조건을 두고 있다.						일부 협정에서 제3국(비당사국) 경유 환적 시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불완전한 문장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78p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해 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 입증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정 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해 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 입증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정 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FTA에서는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세안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서 요구하는 단일의 통과선하증권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인니 내용 수정
78p	아세안·베트남·인도·페루·중국·콜롬비아와·캐나다·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경유국(비당사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세안·베트남·인도·페루·중국·콜롬비아와·캐나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경유국(비당사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추가
78p	이렇게 단일의 운송서류나 통과선하증권, 경유국 거래·소비를 불인정함으로써 BWT 거래를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단일의 운송서류나 통과선하증권, 경유국 거래·소비를 불인정함으로써 BWT 거래를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일의 이유’를 나타내는 격조사는 ‘으로써’
78p	또한 EU·튀르키예·영국과의 협정에서는 단일탁송화물에 대해서만 경유·환적을 허용한다. 단일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운송 중 물품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EU·튀르키예·영국· 이스라엘 과의 협정에서는 단일탁송화물에 대해서만 경유·환적을 허용한다. 단일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운송 중 물품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내용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80p	예를 들어 프랑스 수출자는 싱가포르 물류기지에 포도주 10만병을 5번의 거래에 의해서 수출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5개의 송품장과 5개의 운송서류가 발급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수출자가 싱가포르 물류기지에 포도주 10만병을 5번의 거래를 통해 수출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5개의 송품장과 5개의 운송서류가 발급되었을 것이다.	조사 수정 및 어색한 문구 수정
88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이나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의 이행의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한-캄보디아 FTA <제3.9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그 상품이 중간 경유국의 관세행정기관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 제3.32조 직접운송의 증명서류 > 제3.9조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3.9조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한-이스라엘 FTA <제3.32조 정의> 마.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캄보디아 직접운송 입증 조문 서류 추가, 이스라엘 단일탁송화 물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제3.13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밖의 영역에서 그 관세 당국의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러한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가. 상품이 통과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 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나.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 가.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나. 상품이 통과 중이었던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그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날짜와 장소, 그리고 상품이 놓여진 상태를 포함한 것, 또는 다. 위의 서류가 없는 경우, 직접 선적을 증명할 그 밖의 서류 3. 양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비당사국으로 반출되고 제3.6조에서 정의된 것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산지 상품이 양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될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도록 허용하는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9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이나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의 이행의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96p	제1804호의 상품은 비원산지재료가 제1804가 아니라면 원산지가 충족된다.	제1804호의 상품은 비원산지재료가 제1804호가 아니라면 원산지가 충족된다.	오타 수정
114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2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캄보디아 FTA <제3.2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이스라엘 FTA <제3.1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장에 따라 당사국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획득된 상품 한-인도네시아 CEPA <제3.2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별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6p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와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에 대하여 품목의 개별기준과 제27류 「주(Notes)」에 규정된 공정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 이스라엘 과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에 대하여 품목의 개별기준과 제27류 「주(Notes)」에 규정된 공정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이스라엘 추가																																				
116p	<table border="1"> <thead> <tr> <th>협 정</th><th>화학반응</th><th>증류법(상압, 감압)</th><th>직접혼합</th></tr> </thead> <tbody> <tr> <td>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td><td>제2707호 및 제2710호</td><td>제2710호</td><td>—</td></tr> <tr> <td>캐나다</td><td>제2707호 및 제2710호</td><td>제2710호</td><td>제2710호</td></tr> <tr> <td>페루</td><td>제2707호~제2710호</td><td>제2710호</td><td>—</td></tr> </tbody> </table>	협 정	화학반응	증류법(상압, 감압)	직접혼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	캐나다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제2710호	페루	제2707호~제2710호	제2710호	—	<table border="1"> <thead> <tr> <th>협 정</th><th>화학반응</th><th>증류법(상압, 감압)</th><th>직접혼합</th></tr> </thead> <tbody> <tr> <td>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td><td>제2707호 및 제2710호</td><td>제2710호</td><td>—</td></tr> <tr> <td>캐나다</td><td>제2707호 및 제2710호</td><td>제2710호</td><td>제2710호</td></tr> <tr> <td>페루</td><td>제2707호~제2710호</td><td>제2710호</td><td>—</td></tr> <tr> <td>이스라엘</td><td>제27류</td><td>제2710호</td><td>—</td></tr> </tbody> </table>	협 정	화학반응	증류법(상압, 감압)	직접혼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	캐나다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제2710호	페루	제2707호~제2710호	제2710호	—	이스라엘	제27류	제2710호	—	이스라엘 화학 반응 추가
협 정	화학반응	증류법(상압, 감압)	직접혼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																																				
캐나다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제2710호																																				
페루	제2707호~제2710호	제2710호	—																																				
협 정	화학반응	증류법(상압, 감압)	직접혼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																																				
캐나다	제2707호 및 제2710호	제2710호	제2710호																																				
페루	제2707호~제2710호	제2710호	—																																				
이스라엘	제27류	제2710호	—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16p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와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27류 시작 지점에 주(Note)의 형태로 각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 이스라엘 과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27류 시작 지점에 주(Note)의 형태로 각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118p	미국·콜롬비아 와의 FTA는 제6부(화학공업 제품 : 제28류~제38류) 및 제7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 제39~제40류)에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콜롬비아·이스라엘 과의 FTA는 제6부(화학공업 제품 : 제28류~제38류) 및 제7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 제39~제40류)에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116p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와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27류 시작 지점에 주(Note)의 형태로 각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 이스라엘 과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27류 시작 지점에 주(Note)의 형태로 각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116p	42)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이스라엘과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27류 시작 지점에 주(Note)의 형태로 각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공정”의 경우 페루와의 협정에서는 “화학반응”을 거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협정에서는 제27류의 품목별원산지기준 상에서 규정된 “화학반응”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반면 상압·감압증류법은 모든 협정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 외에 상압·감압증류법을 거치게 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상의 “직접혼합” 충족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42) 페루·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이스라엘과의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27류 시작 지점에 주(Note)의 형태로 각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공정”의 경우 페루와의 협정에서는 “화학반응”을 거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협정에서는 제27류의 품목별원산지기준 상에서 규정된 “화학반응”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한-이스라엘 FTA는 PSR에 화학반응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27류 전체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압·감압증류법은 모든 협정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 외에 상압·감압증류법을 거치게 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상의 “직접혼합” 충족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화학 반응 추가
118p	미국·콜롬비아 와의 FTA는 제6부(화학공업 제품 : 제28류~제38류) 및 제7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 제39~제40류)에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콜롬비아·이스라엘 과의 FTA는 제6부(화학공업 제품 : 제28류~제38류) 및 제7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 제39~제40류)에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19p	구 분	화학반 응	정 제	혼합배합	입자크 기 변화	표준물 질	이성체 분리	분리 금지	구 분	화학반 응	정 제	혼합배합	입자크 기 변화	표준물 질	이성체 분리	분리금 지	이스라엘 추가, 이스라엘 화학반응 제3828호 에 대한 주의 사항 추가
	미국 콜롬 비아	28~38 류 (제382 3호 적용 제외), 39~40 류	28~38 류, 39~40 류	30류, 31류, 33~38류 (제3808호 제외), 39~40류	30류, 31류, 33류, 39류	28~38 류	28~38 류, 39류	28~38 류	미국 콜롬 비아	28~38 류 (제3823 호 적용 제외), 39~40 류	28~38 류, 39~40 류	30류, 31류, 33~38류 (제3808호 제외), 39~40류	30류, 31류, 33류, 39류	28~38 류	28~38 류, 39류	28~38 류	
	중미	28~38 류 (제382 3호 제외)	28~38 류	30류, 31류, 33~38류 (제3808호 제외)	30류, 31류, 33류	28~38 류	28~38 류	28~38 류	중미	28~38 류 (제3823 호 제외)	28~38 류	30류, 31류, 33~38류 (제3808호 제외)	30류, 31류, 33류	28~38 류	28~38 류	28~38 류	
	호주 뉴질 랜드	28~38 류 (제382 3호 제외)	28~38 류	30류, 31류, 33~38류 (제3808호 제외)	30류, 31류, 33류	28~38 류	28~38 류	28~38 류	호주 뉴질 랜드	28류~3 8류 (제3823 호 적용 제외)	28~35 류, 38류	30류, 31류, 제3302호, 제3502.20호, 제3506호~제350 7호, 제3707호	제30류 , 제31류	28~32 류, 35류, 38류	28~32 류, 35류	28~38 류	
	호주 뉴질 랜드	28류~3 8류 (제382 3호 적용 제외)	28~35 류, 38류	30류, 31류, 제3302호, 제3502.20호, 제3506호~제35 07호, 제3707호	제30 류, 제31 류	28~32 류, 35류, 38류	28~32 류, 35류	28~38 류	캐나 다	28류, 29류	28류, 29류	-	-	-	29류	28류, 29류	
	캐나 다	28류, 29류	28류, 29류	-	-	-	29류	28류, 29류	이스라 엘	28류~4 0류 (제382 8호 제외)*	28류~4 0류	30류, 31류, 33~38류(제3808 호 제외), 39~40류	30류, 31류, 33류, 39류	28~38 류	28류~3 8류, 39류	28~38 류	
* 한-이스라엘 FTA 화학반응 적용시 제3828호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 3828호는 없는 세번으로 미국, 콜롬비아, 중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규정한 제3823호를 잘못 명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협정 개정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한-이스라엘 협정문 영문, 국문 추후 개정 예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26p	이해를 돕기 위해 한-미 FTA가 적용되는 제6101.20호의 남자용 의류의 원산지 정기준을 해석해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미 FTA가 적용되는 제6101.20호의 남자용 의류의 원산지 결 정기준을 해석해 본다.				오타 수정
127p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외세번 형태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외 번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재료만 사용되어야 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외세번 형태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외 세 번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재료만 사용되어야 한다.				오타 수정
127p	한-중미 FTA는 모든 직물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Yarn-forward(세번변경+ 외세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외세번은 사(Yarn) 세번이다.				한-중미 FTA는 모든 직물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Yarn-forward(세번변경+ 제 외세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외세번은 사(Yarn) 세번이다.				오타 수정
127p	예를 들어 제61류~제63류에 대하여서는 엘살바도르만 Yarn-forward (세번변경+ 외세번)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61류~제63류에 대하여서는 엘살바도르만 Yarn-forward(세번변경+ 제 외세번) 규정을 적용한다.				오타 수정
130p	라. 싱가포르·EFTA·아세안·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				라. 싱가포르·EFTA·아세안·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캄보디아·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130p	EFTA·아세안· 중국·베트남과의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 혹은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EFTA·아세안·중국·베트남· 캄보디아·이스라엘 과의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 혹은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130p	협 정	사 및 직물 (50~60류)	의류제품 (61~62류)	비 고	협 정	사 및 직물 (50~60류)	의류제품 (61~62류)	비 고	오타 수정
	칠레	CTH	CC + 역내 원단 + 재단/봉 제	의류 위주의 yarn forward	칠레	CTH	CC + 역내 원단 + 재단/봉 제	의류 위주의 yarn forward	
131p					캄보디아	CC/CTH + 제 외 세 번 ***or RVC40% or 염색/날염*	CC or RVC40%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인도네시아	CC/CTH	CC		이스라엘	CC/CTH or MC60%	CC+재단/봉제		
					인도네시아	CC/CTH	CC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33p	칠레·페루·호주·뉴질랜드·아세안·중미·RCEP·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공제 법과 집적법을 두고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칠레·페루·호주·뉴질랜드·아세안·중미·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공제 법과 집적법을 두고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캄보디아 추가																																							
133p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과의 FTA는 MC법을 사용하며 한-캐나다 FTA는 자동차 제품에 집적법 및 순원가법도 추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과의 FTA는 MC법을 사용하며 한-캐나다 FTA는 자동차 제품에 집적법 및 순원가법도 추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 추가																																							
134p	<table><tr><th colspan="3">미 주</th><th>유 럽</th><th colspan="2">아시아</th></tr><tr><td>미국, 콜롬비아</td><td>칠레, 페루, 중미</td><td>캐나다</td><td>EFTA, EU, 터키, 영국</td><td>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인도네시아</td><td>인도, 중국, 싱가포르</td></tr><tr><td>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자동차관련 제품</td><td>공제법 집적법</td><td>MC법 자동차관련제 품 : 순원가법, 집적법</td><td>MC법</td><td>공제법 집적법</td><td>공제법</td></tr></table>					미 주			유 럽	아시아		미국, 콜롬비아	칠레, 페루, 중미	캐나다	EFTA, EU, 터키, 영국	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싱가포르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자동차관련 제품	공제법 집적법	MC법 자동차관련제 품 : 순원가법, 집적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table><tr><th colspan="3">미 주</th><th>유 럽</th><th>중동</th><th colspan="2">아시아</th></tr><tr><td>미국, 콜롬비아</td><td>칠레, 페루, 중미</td><td>캐나다</td><td>EFTA, EU, 터키, 영국</td><td>이스라 엘</td><td>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td>인도, 중국, 싱가포르</td></tr><tr><td>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자동차관련 제품</td><td>공제 법 집적 법</td><td>MC법 자동차관련제 품 : 순원가법, 집적법</td><td>MC법</td><td>MC법</td><td>공제법 집적법</td><td>공제법</td></tr></table>					미 주			유 럽	중동	아시아		미국, 콜롬비아	칠레, 페루, 중미	캐나다	EFTA, EU, 터키, 영국	이스라 엘	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싱가포르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자동차관련 제품	공제 법 집적 법	MC법 자동차관련제 품 : 순원가법, 집적법	MC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캄보디아, 이스라엘+ 중동 칸 추가
미 주			유 럽	아시아																																														
미국, 콜롬비아	칠레, 페루, 중미	캐나다	EFTA, EU, 터키, 영국	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싱가포르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자동차관련 제품	공제법 집적법	MC법 자동차관련제 품 : 순원가법, 집적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미 주			유 럽	중동	아시아																																													
미국, 콜롬비아	칠레, 페루, 중미	캐나다	EFTA, EU, 터키, 영국	이스라 엘	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싱가포르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자동차관련 제품	공제 법 집적 법	MC법 자동차관련제 품 : 순원가법, 집적법	MC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136p	MC법은 「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EFTA·EU·터키·캐나다·영국과의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MC법은 「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EFTA·EU·터키·캐나다·영국· 이스라엘 과의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137p	<table><tr><td>인도네시아</td><td>RVC 또는 QVC로 명시</td><td>40%</td><td>공제법, 집적법</td><td>FOB</td></tr></table>					인도네시아	RVC 또는 QVC로 명시	40%	공제법, 집적법	FOB	<table><tr><td>캄보디아</td><td>RVC</td><td>(35~70 %)</td><td>공제법, 집적법</td><td>FOB</td></tr><tr><td>이스라엘</td><td>MC</td><td>(50~60 %)</td><td>MC</td><td>공장도 가격</td></tr><tr><td>인도네시아</td><td>RVC 또는 QVC로 명시</td><td>40%</td><td>공제법, 집적법</td><td>FOB</td></tr></table>					캄보디아	RVC	(35~70 %)	공제법, 집적법	FOB	이스라엘	MC	(50~60 %)	MC	공장도 가격	인도네시아	RVC 또는 QVC로 명시	40%	공제법, 집적법	FOB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인도네시아	RVC 또는 QVC로 명시	40%	공제법, 집적법	FOB																																														
캄보디아	RVC	(35~70 %)	공제법, 집적법	FOB																																														
이스라엘	MC	(50~60 %)	MC	공장도 가격																																														
인도네시아	RVC 또는 QVC로 명시	40%	공제법, 집적법	FOB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37p	\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				\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					싱가포르 계상기준 “조정가격” 삭제	
	구분	부가가치	요건	산출공식	상품가격 계상기준	구분	부가가치	요건	산출공식		상품가격 계상기준
	칠레	RVC	(45~80 %)	공제법, 집적법	조정가격	칠레	RVC	(45~80 %)	공제법, 집적법		조정가격
	싱가포르	RVC	(45~55 %)	공제법	조정가격 (FOB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싱가포르	RVC	(45~55 %)	공제법		FOB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미국	RVC	(35~60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조정가치, 순원가	미국	RVC	(35~60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조정가치, 순원가	
138p	상품가격은 EFTA·EU·터키·캐나다·영국과의 FTA의 경우 공장도가격 (EX-works)을 사용한다.				상품가격은 EFTA·EU·터키·캐나다·영국· 이스라엘 과의 FTA의 경우 공장도 가격(EX-works)을 사용한다.					이스라엘 추가	
138p	아세안·페루·뉴질랜드·중미와의 FTA 및 RCEP은 FOB 가격을 사용하며,				아세안·페루·뉴질랜드·중미· 캄보디아 와의 FTA 및 RCEP은 FOB 가격을 사용하며,					캄보디아 추가	
144p	협정별 상품가격 내용을 요약하면, EFTA·EU·터키·캐나다·영국과의 FTA는 공장도가격, 아세안·페루·뉴질랜드·중미와의 FTA 및 RCEP은 FOB가격,				협정별 상품가격 내용을 요약하면, EFTA·EU·터키·캐나다·영국· 이스라엘 과의 FTA는 공장도가격, 아세안·페루·뉴질랜드·중미· 캄보디아 와의 FTA 및 RCEP은 FOB가격,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144p	뉴질랜드/RC EP	FOB	—	제3.1 조	뉴질랜드/RCE P/ 캄보디아	FOB	—	제3.1 조	캄보디아 추가		
144p	캐나다	공장도가격(거래가격)	—	제3.20 조	캐나다	공장도가격(거래가격)	—	제3.20 조	이스라엘 추가		
					이스라엘	공장도가격	환급내국세	제3.22 조			
145p	EU·EFTA·터키·영국과의 FTA에서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EU·EFTA·터키·영국· 이스라엘 과의 FTA에서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45p	아세안·페루·뉴질랜드·중미와의 FTA 및 RCEP에서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INCOTERMS의 의미와 일치하나,	아세안·페루·뉴질랜드·중미· 캄보디아 와의 FTA 및 RCEP에서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INCOTERMS의 의미와 일치하나,	캄보디아 추가
148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조 정의>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한-캄보디아 FTA <제3.1조 정의>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를 말한다. 한-이스라엘 FTA <제3.32조 정의> 사.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조 정의>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150p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조>	한-캄보디아 FTA <제3.1조>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재료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재료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한-이스라엘 FTA <제3.32조> 카. 재료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조> 재료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151p	\\재료비 계상기준\\ <table> <tr> <th>협정</th><th>수입재료</th><th>국내조달 재료</th><th>무료(할인)조달재료·자가생산재료</th></tr> <tr> <td>칠레(제4.1조)</td><td rowspan="2">(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용)</td><td rowspan="2">실제지급가격</td><td rowspan="6">생산제비용, 이윤 가산</td></tr> <tr> <td>미국(제6.3조)</td></tr> <tr> <td>싱가포르(제4.1조)</td><td>(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td><td>(실제지급가격 + 매입제비용)</td></tr> <tr> <td>호주(제3.4조)</td><td rowspan="3">CIF</td><td>실제지급가격</td></tr> <tr> <td>콜롬비아(제3.4조)</td><td>실제지급가격</td></tr> <tr> <td>뉴질랜드(제3.5조)</td><td>거래가격</td></tr> </table>	협정	수입재료	국내조달 재료	무료(할인)조달재료·자가생산재료	칠레(제4.1조)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용)	실제지급가격	생산제비용, 이윤 가산	미국(제6.3조)	싱가포르(제4.1조)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	(실제지급가격 + 매입제비용)	호주(제3.4조)	CIF	실제지급가격	콜롬비아(제3.4조)	실제지급가격	뉴질랜드(제3.5조)	거래가격	\\재료비 계상기준\\ <table> <tr> <th>협정</th><th>수입재료</th><th>국내조달 재료</th><th>무료(할인)조달재료·자가생산재료</th></tr> <tr> <td>칠레(제4.1조)</td><td rowspan="2">조정가격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용)</td><td rowspan="2">실제지급가격</td><td rowspan="6">생산제비용, 이윤 가산</td></tr> <tr> <td>미국(제6.3조)</td></tr> <tr> <td>싱가포르(제4.1조)</td><td>(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td><td>(실제지급가격 + 매입제비용)</td></tr> <tr> <td>호주(제3.4조)</td><td rowspan="3">CIF</td><td>실제지급가격</td></tr> <tr> <td>콜롬비아(제3.4조)</td><td>실제지급가격</td></tr> <tr> <td>뉴질랜드(제3.5조)</td><td>거래가격</td></tr> </table>	협정	수입재료	국내조달 재료	무료(할인)조달재료·자가생산재료	칠레(제4.1조)	조정가격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용)	실제지급가격	생산제비용, 이윤 가산	미국(제6.3조)	싱가포르(제4.1조)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	(실제지급가격 + 매입제비용)	호주(제3.4조)	CIF	실제지급가격	콜롬비아(제3.4조)	실제지급가격	뉴질랜드(제3.5조)	거래가격	칠레, 미국 계상기준 명칭 추가
협정	수입재료	국내조달 재료	무료(할인)조달재료·자가생산재료																																						
칠레(제4.1조)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용)	실제지급가격	생산제비용, 이윤 가산																																						
미국(제6.3조)																																									
싱가포르(제4.1조)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	(실제지급가격 + 매입제비용)																																							
호주(제3.4조)	CIF	실제지급가격																																							
콜롬비아(제3.4조)		실제지급가격																																							
뉴질랜드(제3.5조)		거래가격																																							
협정	수입재료	국내조달 재료	무료(할인)조달재료·자가생산재료																																						
칠레(제4.1조)	조정가격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용)	실제지급가격	생산제비용, 이윤 가산																																						
미국(제6.3조)																																									
싱가포르(제4.1조)	(실제지급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	(실제지급가격 + 매입제비용)																																							
호주(제3.4조)	CIF	실제지급가격																																							
콜롬비아(제3.4조)		실제지급가격																																							
뉴질랜드(제3.5조)		거래가격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58p	EFTA, 아세안, EU, 터키, 페루, 캐나다, 베트남,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FTA, 아세안, EU, 터키, 페루, 캐나다, 베트남,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추가
158p	중국, 인도 와 의 협정은 원산지재료비의 계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원산지재료비의 계상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과의 협정은 원산지재료비의 계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원산지재료비의 계상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158p	페루 •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 생산자가 직접수입된 재료는 CIF • 국내생산재료는 거래가격(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등 제외) • 자가생산재료는 제조원가+이윤	페루 • 원산지 가치(제3.3조) 재료의 •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직접 수입된 재료는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는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 가치 • 자가 생산된 재료는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가산 가능(제3.3조)	조문 표시 및 비원산지재 료비 내용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58p	캐나다 • 상품생산국 생산자 실제지불 가격 • 자가생산재료는 동 재료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합리적 할당 비용 포함)의 합. 원산지/비원산지재료를 자가생산재료로 지정가능	• 수입된 재료는 CIF • 국내거래 재료는 평가협정 원칙에 따라 결정된 가치	캐나다 •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재료 가치(제3.5조)	•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12조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비원산지 구성상품과 비원산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며, • 당사국으로의 수입 당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가격으로서, 필요한 경우 수입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치, 또는 • 국내 거래인 경우, 그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국제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제3.5조)	조문 표시 및 협정문 자세하게 인용
158p	베트남 • 원산지재료비용+노무비+간접비+이윤+그 밖의 비용(제3.3조 2)	• 수입된 재료는 CIF, 또는 •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	베트남 • 원산지재료비용+노무비+간접비+이윤+그 밖의 비용(제3.3조)	•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이 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제3.3조)	비원산지재료 조문 표시 및 협정문 자세하게 인용
158p					조문 표시 및 협정문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중미	• 원산지재료 가치	- 수입된 재료는 CIF - 국내 조달재료 :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공급자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까지의 운송하는 발생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 - 자가생산재료 : 제조원가+이윤		중미	• 원산지 재료의 가치(제3.3조)	-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재료는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는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거래 가치 - 자가생산된 재료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 +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추가 가능(제3.3조)		자세하게 인용			
159p	인도	-	- 수입시 과세가격(CIF) 또는 -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 생산국 내 최초 확인 가격(제3.4조 4) 공제요소 (제3.4조5) <table> <tr> <td>운송비(국내)</td> <td>조세(환급액 제외)</td> <td>관세(면제, 환급액 제외)</td> </tr> </table>		운송비(국내)	조세(환급액 제외)	관세(면제, 환급액 제외)	인도	-	- 수입시 과세가격(CIF) 또는 -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 생산국 내 최초 확인 가격 - 생산자의 소재지로 수송하는데 발생한 국내수송비용과 관세 또는 조세(면제, 환급액 제외), 통관 중개 수수료 공제 가능(제3.4조)		다른 협정과 양식 통일
운송비(국내)	조세(환급액 제외)	관세(면제, 환급액 제외)										
159p	중국	-	- 수입시 CIF가격 - 국내조달시 최초 확인 가격(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가격)		중국	-	-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수입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당사국에서 획득된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그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그리고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하지 아니함)(제3.5조)		비원산지재료 조문 표시 및 협정문 자세하게 인용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59p	RCEP • 획득되거나 자가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 가치 • 직접법/집적법 RVC 계산시 분가치 (원산지재료 가치+직접노무비+직접경비+이윤+그 밖의 비용) 수입시 과세가격(CIF) 또는 당사자 획득재료는 최초 확인 지불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제3.5조) 공제요소 (제3.5조5) 운송관련 비용(국내) 조세(환급액 제외) 폐기물 유출물				RCEP • 획득되거나 자가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 가치 • 직접법/집적법 RVC 계산시 분가치 =원산지재료가치+직접노무비+직접경비+이윤+그 밖의 비용(제3.5조) • 수입된 재료는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 당사자에서 획득된 재료는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 생산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면제, 환급되거나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유출물의 비용 공제 가능(제3.5조)	다른 협정과 양식 통일		
159p	인도네시아 원산지재료가치+직접노무비+직접경비+운송비+이윤(제3.4조) 수입시 CIF가격 국내조달시 지불된 최초 확인 가격	캄보디아 •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 • 직접법/집적법 RVC 계산시 분가치 = 원산지재료가치+직접노무비+직접경비+이윤+그 밖의 비용(제3.4조) 이스라엘 -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제3.4조)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제3.32조)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및 인도네시아 조문 표시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인도네시아 - 원산지재료가치+직접노무비+직접경비+운송비+이윤(제3.4조) - 수입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가격(제3.4조)	
162p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재료비 :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비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이다.	캄보디아 추가
162p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재료비 : 원산지재료의 가격계산 기준 미규정 비원산지재료비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65	한-인도네시아 CEPA <제3.4조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원산지재료가치(VOM)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의 가치를 포함한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이다.			한-캄보디아 FTA <제3.4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가. 1)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나.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가격(CIF), 또는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한-이스라엘 FTA <제3.32조 정의> 다.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4조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원산지재료가치(VOM)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의 가치를 포함한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이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185p 표 (재료/ 공정)	<table><thead><tr><th>협 정</th><th>공정누 적</th><th>재료누 적</th></tr></thead><tbody><tr><td>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td><td>O</td><td rowspan="2">O</td></tr><tr><td>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EU공정 인정), RCEP, 인도네시아</td><td>X</td></tr></tbody></table>			협 정	공정누 적	재료누 적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O	O	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EU공정 인정), RCEP, 인도네시아	X	<table><thead><tr><th>협 정</th><th>공정누 적</th><th>재료누 적</th></tr></thead><tbody><tr><td>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td><td>O</td><td rowspan="2">O</td></tr><tr><td>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EU공정 인정),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td>X</td></tr></tbody></table>	협 정	공정누 적	재료누 적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O	O	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EU공정 인정),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X	
협 정	공정누 적	재료누 적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O	O																			
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EU공정 인정), RCEP, 인도네시아	X																				
협 정	공정누 적	재료누 적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O	O																			
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EU공정 인정),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X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89p	<table><thead><tr><th>협정</th><th>기준가격</th><th>비중</th></tr></thead><tbody><tr><td>칠레</td><td>조정가격</td><td>8%</td></tr><tr><td>싱가포르</td><td>관세가격</td><td rowspan="4">10%</td></tr><tr><td>미국, 호주, 콜롬비아</td><td>조정가치</td></tr><tr><td>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td><td>FOB*</td></tr><tr><td>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td><td>공장도 가격</td></tr></tbody></table>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공장도 가격	<table><thead><tr><th>협정</th><th>기준가격</th><th>비중</th></tr></thead><tbody><tr><td>칠레</td><td>조정가격</td><td>8%</td></tr><tr><td>싱가포르</td><td>FOB가격에 기초 조정된 관세가격</td><td rowspan="4">10%</td></tr><tr><td>미국, 호주, 콜롬비아</td><td>조정가치</td></tr><tr><td>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td><td>FOB*</td></tr><tr><td>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td><td>공장도 가격</td></tr></tbody></table>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FOB가격에 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공장도 가격	싱가포르 가격기준 수정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공장도 가격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FOB가격에 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공장도 가격																																				
187p 표	RCEP <제3.4조 누적>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2.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검토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한-인도네시아 CEAP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RCEP <제3.4조 누적>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2.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검토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한-이스라엘 FTA <제3.2조 원산지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그 밖의 형태의 누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한-캄보디아 FTA <제3.6조 누적>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제1항에 규정된 누적이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1)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추가, 2) 오탈자 수정 (CEAP→C EPA)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합의할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89p 5번째줄	대부분의 협정에서 최소허용수준을 일반품목군, 농축수산물, 섬유류 제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세안·EU·터키·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일반품목군과, 농축수산물을 구분 없이 적용한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최소허용수준을 일반품목군, 농축수산물, 섬유류 제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세안·EU· 튀르키예 ·베트남·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일반품목군과, 농축수산물을 구분 없이 적용한다.	캄보디아 추가																														
189p 표	<table><tr><th>협정</th><th>기준가격</th><th>비중</th></tr><tr><td>칠레</td><td>조정가격</td><td>8%</td></tr><tr><td>싱가포르</td><td>관세가격</td><td rowspan="4">10%</td></tr><tr><td>미국, 호주, 콜롬비아</td><td>조정가치</td></tr><tr><td>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td><td>FOB*</td></tr><tr><td>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td><td>공장도 가격</td></tr></table>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공장도 가격	<table><tr><th>협정</th><th>기준가격</th><th>비중</th></tr><tr><td>칠레</td><td>조정가격</td><td>8%</td></tr><tr><td>싱가포르</td><td>관세가격</td><td rowspan="4">10%</td></tr><tr><td>미국, 호주, 콜롬비아</td><td>조정가치</td></tr><tr><td>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td>FOB*</td></tr><tr><td>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td><td>공장도 가격</td></tr></table>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튀르키예 ,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공장도 가격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	공장도 가격																																
협정	기준가격	비중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FOB*																																
EFTA, EU, 튀르키예 ,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공장도 가격																																
189p 11번째 줄	농수축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투입비율 (일반품목군과 동일) 충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베트남·EU·튀르키예·영국과의 FTA는 투입비율만을 규정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투입비율 (일반품목군과 동일) 충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베트남·EU·튀르키예·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과의 FTA와 RCEP 은 투입비율만을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RCEP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91p 표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98p 표	협정		비중		협정		비중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터키->튀 르키예		
	미국, 인도		7%		미국, 인도		7%				
	칠레, 싱가포르		8%		칠레, 싱가포르		8%				
	아세안, EFTA,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 미, RCEP, 인도네시아		10%		아세안, EFTA,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10%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10%(중량 또는 가격기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10%(중량 또는 가격기준)				
	EU, 터키, 영국		8~30%(일부는 가격기준)*		EU, 튀르키예 , 영국		8~30%(일부는 가격기준)*				
	* EU, 터키 및 영국 협정의 경우 섬유제품에 대한 최소허용수준은 일괄적으로 8~30%를 적용하 는 것이 아니다. EU, 터키 및 영국 협정에서는 대부분의 섬유 품목별원산지기준이 가공공정기 준으로 되어 있어, 가공공정기준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최소허용수준을 정 하고 있는 것이다. 섬유류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주석 5와 6에 품목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소허용수준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 EU, 튀르키예 및 영국 협정의 경우 섬유제품에 대한 최소허용수준은 일괄적으로 8~30%를 적 용하는 것이 아니다. EU, 튀르키예 및 영국 협정에서는 대부분의 섬유 품목별원산지기준이 가 공공정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공공정기준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최소허용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섬유류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주석 5와 6에 품 목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소허용수준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91p 표	구분	가격기준으로 최소허용수준 산출			중량기준 산출	구분	가격기준으로 최소허용수준 산출			중량기준 산출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기준가격	일반품목	농축수산물	섬유류		기준가격	일반품목	농축수산물	섬유류	
	칠레	조정가치	8% 이하	1류~24류 CTSH 충족하면 8% 이하	8% 이하	칠레	조정가치	8% 이하	1류~24류 CTSH 충족하면 8% 이하	8% 이하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8% 이하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8% 이하	
	아세안 RCEP 인도네시아	FOB	10% 이하		10% 이하	아세안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FOB	10% 이하		10% 이하	
	인도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7% 이하	인도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7% 이하	
	EFTA	공장도가격	10% 이하	1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EFTA	공장도가격	10% 이하	1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미국	조정가치	10% 이하	1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일부제외)	7% 이하	미국	조정가치	10% 이하	1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일부제외)	7% 이하	
	EU/터키/ 영국	공 장 도 가 격	10% 이하		8~30% 이하 (일부가격 기 준)	EU/튀르 키예/영국	공장도가격	10% 이하		8~30% 이하 (일부가격 기준)	
	페루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10% 이하	페루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10% 이하	
	호주	조정가치	10% 이하	1류~1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이하(일부품목 적용 제외)* 15류~24류 10% 이하	10% 이하	호주	조정가치	10% 이하	1류~1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이하(일부품목 적용 제외)* 15류~24류 10% 이하	10% 이하	
	캐나다	공 장 도 가 격	10% 이하	1류~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이하	10% 이하	캐나다	공 장 도 가 격	10% 이하	1류~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이하	10% 이하	
	중국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 불가 15류~24류 CTSH 충족시 10% 이하	10% 이하 (중량 또는 가 격기준)	이스라엘	공 장 도 가 격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시 10% 이하	10% 이하	
	베트남		10% 이하			중국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 불가 15류~24류 CTSH 충족시 10% 이하	10% 이하 (중량 또는 가 격기준)	
	뉴질랜드		10% 이하	1류~14류 적용가능(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 10% 이하 15류~24류 10% 이하		베트남		10% 이하			
	콜롬비아	조정가치	10% 이하	1류~24류 CTSH 충족시 적 용가능 10% 이하 (15류 분류 되는 비원산지재료 일부 최소 허요수준 적용 제외)**	10%이하	뉴질랜드		10% 이하	1류~14류 적용가능(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 10% 이하 15류~24류 10% 이하		
	중미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시 10% 이하	10% 이하	콜롬비아	조정가치	10% 이하	1류~24류 CTSH 충족시 적 용가능 10% 이하 (15류 분류 되는 비원산지재료 일부 최소 허요수준 적용 제외)**	10%이하	
						중미	FOB	10% 이하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시 10% 이하	10% 이하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03p 표	RCEP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그룹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그리고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3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은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0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RCEP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그룹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그리고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3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은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한-이스라엘 FTA <제3.5조 최소허용수준> 1. 제3.4조제1항 및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3-가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초과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모든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한-캄보디아 FTA <제3.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0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206p 16번째 줄	EFTA·EU·튀르키예·중국·베트남·뉴질랜드·영국과의 FTA 및 RCEP에서는 중간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FTA·EU·튀르키예·중국·베트남·뉴질랜드·영국· 이스라엘·캄보디아 와의 FTA 및 RCEP에서는 중간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207p 표	<table> <tr> <th>구 분</th> <th>칠레, 싱가포르</th> <th>미국, 뉴질랜드</th> <th>페루,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th> <th>아세안, 인도</th> </tr> <tr> <td>중간재 인정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적용범위</td> <td>자가생산물</td> <td>자가생산물</td> <td>역내생산물</td> <td>×</td> </tr> <tr> <td>중간재 지정의무</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 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중간재 인정여부	○	○	○	×	적용범위	자가생산물	자가생산물	역내생산물	×	중간재 지정의무	○	×	×	×	<table> <tr> <th>구 분</th> <th>칠레, 싱가포르</th> <th>미국, 뉴질랜드</th> <th>페루,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h> <th>아세안, 인도</th> </tr> <tr> <td>중간재 인정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적용범위</td> <td>자가생산</td> <td>자가생산</td> <td>역내생산물</td> <td>×</td> </tr> </table>	구 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중간재 인정여부	○	○	○	×	적용범위	자가생산	자가생산	역내생산물	×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구 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중간재 인정여부	○	○	○	×																																		
적용범위	자가생산물	자가생산물	역내생산물	×																																		
중간재 지정의무	○	×	×	×																																		
구 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중간재 인정여부	○	○	○	×																																		
적용범위	자가생산	자가생산	역내생산물	×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품	품		
		중간재 지정의무	○	×	×	×
217p 10번째 줄	칠레·EFTA·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중간재 가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칠레·EFTA·베트남·중국· 이스라엘·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중간재 가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214p 표	RCEP <제3.12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8조 중간재> 1.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리고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 상비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를 고려한다.	RCEP <제3.12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한-이스라엘 FTA <제3.4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1. 제3.1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상품은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⁶⁹⁾ 2.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상품이 되어, 그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한-캄보디아 FTA <제3.8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적인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원산지로 취급된다. 이 경우, 그 재료를 그 상품의 생산자가 생산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중간재 규정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한-인도네시아 CEPA <제3.8조 중간재> 1.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리고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 상비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를 고려한다.	
214p 각주		RCEP <제3.12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한-이스라엘 FTA <제3.4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1. 제3.1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상품은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¹ 2.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상품이 되어, 그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¹ 상품이 제3.4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국에서 개발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제조 공정으로 간주된다. 한-캄보디아 FTA <제3.8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신규 협정의 협정문 내용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비원산지 재료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적인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원산지로 취급된다. 이 경우, 그 재료를 그 상품의 생산자가 생산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8조 중간재> -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리고 -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 상비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를 고려한다.													
216p 표	<table> <tr> <th>인정범위</th> <th>상품 및 재료</th> <th>재료</th> </tr> <tr> <td>협정</td> <td>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인도네시아</td> <td>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중국, 영국</td> </tr> </table>	인정범위	상품 및 재료	재료	협정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중국, 영국	<table> <tr> <th>인정범위</th> <th>상품 및 재료</th> <th>재료</th> </tr> <tr> <td>협정</td> <td>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 <td>아세안, 인도, EFTA, EU, 튀르키예, 중국, 영국, 이스라엘</td> </tr> </table>	인정범위	상품 및 재료	재료	협정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EFTA, EU, 튀르키예, 중국, 영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인정범위	상품 및 재료	재료													
협정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중국, 영국													
인정범위	상품 및 재료	재료													
협정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EFTA, EU, 튀르키예, 중국, 영국, 이스라엘													
217p 1번째줄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상품 및 재료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중국, 영국, 이스라엘과의 협정은 특혜대상이 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만 규정하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상품 및 재료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아세안, 인도, EFTA, EU, 튀르키예, 중국, 영국, 이스라엘과의 협정은 특혜대상이 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만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17p 5번째줄	1) 상품 및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대체가능물품 규정 적용범위를 상품 및 재료로 규정하고, 회계년도 중 동일한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기 협정은 대체 가능한 재료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수출되는 상품도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 보관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를 재고관리기법으로 결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상품 및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캄보디아·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은 대체가능물품 규정 적용범위를 상품 및 재료로 규정하고, 회계년도 중 동일한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기 협정은 대체 가능한 재료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수출되는 상품도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 보관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를 재고관리기법으로 결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캄보디아 추가
217p 11번째 줄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영국과의 협정은 적용대상을 재료로만 한정하고 있다. EFTA·EU·터키·영국과의 FTA에서는 생산자의 증빙서류 보관책임 및 정보제공 의무를 다른 협정에 비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국이 재고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세관당국의 사전승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EFTA·아세안·인도·EU·튀르키예·중국·영국· 이스라엘 과의 협정은 적용대상을 재료로만 한정하고 있다. EFTA·EU·튀르키예·영국과의 FTA에서는 생산자의 증빙서류 보관책임 및 정보제공 의무를 다른 협정에 비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국이 재고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세관당국의 사전승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스라엘 추가
217p 16번째 줄	EFTA·EU·인도·터키·영국과의 협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EFTA·EU·인도·튀르키예·영국· 이스라엘 과의 협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222p 표	RCEP <제3.1조 정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3.11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RCEP <제3.1조 정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3.11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이스라엘 협정 각주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자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동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조 정의>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3.14조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자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동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이스라엘 FTA <제3.8조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⁴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입증하는 목적상, 그 상품의 제조에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고,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3.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그러한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이 사용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이 기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획득된 상품의 수량과 재고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다면 획득되었을 상품의 수량이 같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6. 이 기법은 상품이 제조된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기록되고 적용된다. 7. 이러한 편의의 수혜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혜자는 그 수량이 관리된 방법에 대하여 진술을 제공한다. 8. 관세 당국은 승인의 사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그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한-캄보디아 FTA <제3.14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조 정의>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3.14조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229p 15번째 줄	싱가포르, EFTA·아세안·인도·미국·EU·터키·페루·캐나다·콜롬비아·중국·베트남·중미·영국·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간접재료를 재료로 보지 않으므로 최종물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때 원산지 판정에 고려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제조간접비(상품에 가격에 반영)에 계상된다.	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미국·EU·튀르키예·페루·캐나다·콜롬비아·중국·베트남·중미·영국· 이스라엘·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간접재료를 재료로 보지 않으므로 최종물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때 원산지 판정에 고려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제조간접비(상품에 가격에 반영)에 계상된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30p 상단 표	<table> <tr> <th>구 분</th> <th>「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th> <th>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th> </tr> <tr> <td>해당 협정</td> <td>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인도네시아</td> <td>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td> </tr> <tr> <td>원산지 충족 판정</td> <td>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 간접비에 계상</td> <td>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td> </tr> </table>	구 분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	해당 협정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	원산지 충족 판정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 간접비에 계상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table> <tr> <th>구 분</th> <th>「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th> <th>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th> </tr> <tr> <td>해당 협정</td> <td>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 <td>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td> </tr> <tr> <td>원산지 충족 판정</td> <td>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 간접비에 계상</td> <td>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td> </tr> </table>	구 분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	해당 협정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	원산지 충족 판정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 간접비에 계상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구 분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																			
해당 협정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																			
원산지 충족 판정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 간접비에 계상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구 분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																			
해당 협정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																			
원산지 충족 판정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 간접비에 계상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230p 5번째줄	칠레,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재료비는 \$65(연번 1+6+7) 이며, 비원산지재료비는 \$90(연번 2+3+4+5) 이다. 그 이외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간접재료를 제조간접비에 계상하므로 원산지재료비는 \$60(연번 1)이며, 비원산지 재료비는 \$90(연번 2+3+4+5)로 계상된다.			칠레,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재료비는 \$65(연번 1+6+7) 이며, 비원산지재료비는 \$90(연번 2+3+4+5) 이다. 그 이외의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간접재료를 제조간접비에 계상하므로 원산지재료비는 \$60(연번 1)이며, 비원산지 재료비는 \$90(연번 2+3+4+5)로 계상된다.			RCEP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 간접재료 적용 방법 \ <table><tr><td colspan="5">• 완제품 : 스마트폰(HS 8517.12)</td></tr><tr><td colspan="5">투입원재료</td></tr><tr><td>연번</td><td>원재료명</td><td>HS 코드</td><td>원산지</td><td>가격(\$)</td></tr><tr><td>1</td><td>CPU</td><td>8534.10</td><td>한 국</td><td>60</td></tr><tr><td>2</td><td>스피커, 이어폰</td><td>8517.70</td><td>일 본</td><td>20</td></tr><tr><td>3</td><td>프레임</td><td>8532.21</td><td>일 본</td><td>20</td></tr><tr><td>4</td><td>디스플레이</td><td>8517.70</td><td>일 본</td><td>40</td></tr><tr><td>5</td><td>USB 케이블</td><td>8523.29</td><td>일 본</td><td>10</td></tr><tr><td>6</td><td>생산설비용 연료</td><td>2710</td><td>일 본</td><td>2</td></tr><tr><td>7</td><td>상품 시험장비 부품</td><td>9033</td><td>일 본</td><td>3</td></tr></table>	• 완제품 : 스마트폰(HS 8517.12)					투입원재료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가격(\$)	1	CPU	8534.10	한 국	60	2	스피커, 이어폰	8517.70	일 본	20	3	프레임	8532.21	일 본	20	4	디스플레이	8517.70	일 본	40	5	USB 케이블	8523.29	일 본	10	6	생산설비용 연료	2710	일 본	2	7	상품 시험장비 부품	9033	일 본	3	\ 간접재료 적용 방법 \ <table><tr><td colspan="5">• 완제품 : 스마트폰(HS 8517.12)</td></tr><tr><td colspan="5">투입원재료</td></tr><tr><td>연번</td><td>원재료명</td><td>HS 코드</td><td>원산지</td><td>가격(\$)</td></tr><tr><td>1</td><td>CPU</td><td>8534.10</td><td>한 국</td><td>60</td></tr><tr><td>2</td><td>스피커, 이어폰</td><td>8517.70</td><td>미 국</td><td>20</td></tr><tr><td>3</td><td>프레임</td><td>8532.21</td><td>미 국</td><td>20</td></tr><tr><td>4</td><td>디스플레이</td><td>8517.70</td><td>미 국</td><td>40</td></tr><tr><td>5</td><td>USB 케이블</td><td>8523.29</td><td>미 국</td><td>10</td></tr><tr><td>6</td><td>생산설비용 연료</td><td>2710</td><td>미 국</td><td>2</td></tr><tr><td>7</td><td>상품 시험장비 부품</td><td>9033</td><td>미 국</td><td>3</td></tr></table>	• 완제품 : 스마트폰(HS 8517.12)					투입원재료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가격(\$)	1	CPU	8534.10	한 국	60	2	스피커, 이어폰	8517.70	미 국	20	3	프레임	8532.21	미 국	20	4	디스플레이	8517.70	미 국	40	5	USB 케이블	8523.29	미 국	10	6	생산설비용 연료	2710	미 국	2	7	상품 시험장비 부품	9033	미 국	3	RCEP 추가로 일본산 재료 미국으로 수정
• 완제품 : 스마트폰(HS 8517.12)																																																																																																							
투입원재료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가격(\$)																																																																																																			
1	CPU	8534.10	한 국	60																																																																																																			
2	스피커, 이어폰	8517.70	일 본	20																																																																																																			
3	프레임	8532.21	일 본	20																																																																																																			
4	디스플레이	8517.70	일 본	40																																																																																																			
5	USB 케이블	8523.29	일 본	10																																																																																																			
6	생산설비용 연료	2710	일 본	2																																																																																																			
7	상품 시험장비 부품	9033	일 본	3																																																																																																			
• 완제품 : 스마트폰(HS 8517.12)																																																																																																							
투입원재료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가격(\$)																																																																																																			
1	CPU	8534.10	한 국	60																																																																																																			
2	스피커, 이어폰	8517.70	미 국	20																																																																																																			
3	프레임	8532.21	미 국	20																																																																																																			
4	디스플레이	8517.70	미 국	40																																																																																																			
5	USB 케이블	8523.29	미 국	10																																																																																																			
6	생산설비용 연료	2710	미 국	2																																																																																																			
7	상품 시험장비 부품	9033	미 국	3																																																																																																			
236p 표	RCEP <제3.10조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그 상품 생산자의 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2. 이 조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 만 그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RCEP <제3.10조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그 상품 생산자의 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2. 이 조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 만 그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3조 중립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한-이스라엘 FTA <제3.11조 중립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상품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중립제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공구, 그리고 라.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상품 한-캄보디아 FTA <제3.13조 중립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3조 중립제>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237p 표	EU·터키·EFTA·영국과 맺은 FTA는 협정문에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체로 간주한다」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표에서 한·싱가포르 FTA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한다. 이에 본체의 원산지판정에 세번변경 기준 적용시 원산지 판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EU·튀르키예·EFTA·영국·이스라엘과 맺은 FTA는 협정문에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체로 간주한다」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FTA와의 협정은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표에서 한·싱가포르 FTA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 협정들은 본체의 원산지판정에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원산지 판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구분하여 원산지를 해석된다.	이스라엘 설명 추가																		
238p 상단 표	<table><tr><th>구 분</th><th>미 고려 협정</th><th>원산지별로 구분계상 하는 협정</th></tr><tr><td>부가가치기준 적용시</td><td>아세안, 캐나다, 베트남</td><td>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td></tr><tr><td>세번변경기준 적용시</td><td colspan="2">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미고려</td></tr></table>	구 분	미 고려 협정	원산지별로 구분계상 하는 협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미고려		<table><tr><th>구 분</th><th>미 고려 협정</th><th>원산지별로 구분계상 하는 협정</th></tr><tr><td>부가가치기준 적용시</td><td>아세안, 캐나다, 베트남</td><td>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튀르키예,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tr><tr><td>세번변경기준 적용시</td><td colspan="2">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미고려</td></tr></table>	구 분	미 고려 협정	원산지별로 구분계상 하는 협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튀르키예,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미고려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구 분	미 고려 협정	원산지별로 구분계상 하는 협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미고려																				
구 분	미 고려 협정	원산지별로 구분계상 하는 협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튀르키예,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미고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42p 표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한-이스라엘 FTA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않고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된다. 한-캄보디아 FTA <제3.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고려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 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244p 표	<table><tr><th>구분</th><th>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th><th>미 고려 협정</th></tr><tr><td>부가가치 기준 적용시</td><td>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td><td>캐나다</td></tr><tr><td>세번변경기준 적용시</td><td colspan="2">모든 협정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td></tr></table>	구분	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	미 고려 협정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캐나다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table><tr><th>구분</th><th>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th><th>미 고려 협정</th></tr><tr><td>부가가치 기준 적용시</td><td>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td>캐나다</td></tr><tr><td>세번변경기준 적용시</td><td colspan="2">모든 협정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td></tr></table>	구분	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	미 고려 협정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구분	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	미 고려 협정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캐나다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구분	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	미 고려 협정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협정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244p 10번째 줄	EU, 튀르키예, 영국 및 이스라엘과의 FTA 경우도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EU, 튀르키예, 영국 및 이스라엘 과의 FTA는「 원산지자격 단위 」조항에서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제품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내용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를 따르므로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의 고려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소매용·포장재 특례는 협정문상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법인 「FTA관계특례법시행규칙 별표 2」 한-싱가포르 FTA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 협정들은 내용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를 따르므로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의 고려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스라엘 FTA 추가 및 문구 수정	
247p 표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1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가.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료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그 상품의 세번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한-이스라엘 FTA <제3.7조 자격 단위> 2.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5에 따라 포장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된다. 한-캄보디아 FTA <제3.11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2.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제3.2조제1항가호에 따라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나. 그 상품이 제3.2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는 다.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상품이 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1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료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결정 시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원산지 재료가 그 상품의 세번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48p 4번째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를 제외 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FTA, EU, 터키, 영국과의 FTA는 협정문상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를 제외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FTA, EU,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과의 FTA는 협정문상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캄보디아 이스라엘 추가
249p 표	아세안·미국·페루·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RCEP·인도네시아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EFTA 협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국내법에서 위와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함 EU/터키/영국 협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아세안·미국·페루·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RCEP·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EFTA 협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국내법에서 위와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함⁷⁴⁾ EU/튀르키예/영국/이스라엘 협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249p 각주	74)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 자목을 준용한다.	운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 자목 을 준용한다.	FTA특례법 시행규칙 참고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51p 1번째줄	HS 통칙 제3호에 의한 세트물품의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은 EFTA·EU·튀르키예·캐나다·미국·페루·중국·콜롬비아·중미와의 FTA이며, 나머지 협정은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HS 통칙 제3호에 의한 세트물품의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은 EFTA·EU·튀르키예·캐나다· 영국 ·미국·페루·중국·콜롬비아·중미· 이스라엘 과의 FTA이며, 나머지 협정은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및 이스라엘 추가																																								
251p 표 상단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EFTA·EU 터키·캐나다·영국</th><th colspan="2">미 국</th><th rowspan="2">페루·중국·중미</th><th rowspan="2">콜롬비아</th></tr><tr><th>일반품목</th><th>섬유류</th></tr><tr><td>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td><td>○</td><td>○</td><td>○</td><td>○</td><td>○</td></tr><tr><td>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td><td>공장도 가격의 15% 이하</td><td>조정가치의 15% 이하</td><td>관세가치의 10% 이하</td><td>FOB* 가격의 15% 이하</td><td>조정가치의 15% 이하</td></tr></table> * 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는 세트물품 규정이 없어 활용할 수 없음	구 분	EFTA·EU 터키·캐나다·영국	미 국		페루·중국·중미	콜롬비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EFTA·EU 튀르키예·캐나다·영국·이스라엘</th><th colspan="2">미 국</th><th rowspan="2">페루·중국·중미</th><th rowspan="2">콜롬비아</th></tr><tr><th>일반품목</th><th>섬유류</th></tr><tr><td>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td><td>○</td><td>○</td><td>○</td><td>○</td><td>○</td></tr><tr><td>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td><td>공장도 가격의 15% 이하</td><td>조정가치의 15% 이하</td><td>관세가치의 10% 이하</td><td>FOB* 가격의 15% 이하</td><td>조정가치의 15% 이하</td></tr></table> * 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베트남·RCEP·캄보디아·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세트물품 규정이 없어 활용할 수 없음	구 분	EFTA·EU 튀르키예·캐나다·영국· 이스라엘	미 국		페루·중국·중미	콜롬비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이스라엘 추가 별표*)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추가
구 분	EFTA·EU 터키·캐나다·영국			미 국				페루·중국·중미	콜롬비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구 분	EFTA·EU 튀르키예·캐나다·영국· 이스라엘	미 국		페루·중국·중미	콜롬비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251p 4번째줄	EFTA·EU·터키·캐나다·영국과의 FTA는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세트물품 공장도가격의 15%이하 일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EFTA·EU·튀르키예·캐나다·영국· 이스라엘 과의 FTA는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세트물품 공장도가격의 15%이하 일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이스라엘 추가																																								
251p 11번째 줄	세트물품을 규정하지 않는 협정은(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베트남·RCEP·인도네시아) 품목분류 기준 상 세트로 분류되는 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원산지결정의 자격단위가 HS코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협정에서 “단순한 세트 구성”은 불	세트물품을 규정하지 않는 협정은(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베트남·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기준 상 세트로 분류되는 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원산지결정의 자격단위가 HS코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협정에서 “단순한 세트 구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인정공정의 하나로 규정하는 협정이 있어 해당 협정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HS 통칙3의 세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각 구성 제품별로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성”은 불인정공정의 하나로 규정하는 협정이 있어 해당 협정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HS 통칙3의 세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각 구성 제품별로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254p 표	한-중미 FTA <제3.9조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한-중미 FTA <제3.9조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한-이스라엘 FTA <제3.10조 세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추가
256p 1번째줄	EFTA·인도·EU·터키·페루·캐나다·콜롬비아·중미·영국과의 협정에서는 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협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법인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EFTA·인도·EU·튀르키예·페루·캐나다·콜롬비아·중미·영국·이스라엘과의 협정에서는 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협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법인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56p 15번째 줄	이와 달리 칠레·미국·싱가포르·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칠레·미국·싱가포르·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RCEP에서는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추가								
256p 표	<table> <tr> <th>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th> <th>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th> </tr> <tr> <td>EFTA, 인도,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td> <td>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인도네시아</td> </tr> </table>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	EFTA, 인도,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인도네시아	<table> <tr> <th>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th> <th>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th> </tr> <tr> <td>EFTA,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 이스라엘</td> <td>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 </tr> </table>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	EFTA,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 이스라엘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										
EFTA, 인도,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인도네시아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										
EFTA,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 이스라엘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258p 표	한-중미 FTA 제3.16조 제3.16조 상품의 재수출4 1.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은 당사국이 발행하는 상품의 재수출증명서를 인정한다. 재수출증명서는 이 협정의 비당사국으로부터 들어오고 그 이후 재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5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증명한다.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는 그 비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2. 제1항 적용의 목적상, 다음이 요구된다. 가. 당사국의 자유지역 내에서, 그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변화시키는 변형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와 감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에 수행된 공정6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지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재수출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한-중미 FTA 제3.16조 제3.16조 상품의 재수출4 1.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은 당사국이 발행하는 상품의 재수출증명서를 인정한다. 재수출증명서는 이 협정의 비당사국으로부터 들어오고 그 이후 재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5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증명한다.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는 그 비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2. 제1항 적용의 목적상, 다음이 요구된다. 가. 당사국의 자유지역 내에서, 그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변화시키는 변형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와 감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에 수행된 공정6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지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재수출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에만 적용되며, 제1장(초반적 정의)에 언급된 대로 중미 공화국들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자유지역은 한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 내에 위치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공정은 당사국과 비당사국에 따라 허용되는 환적, 하역, 보관, 화물의 분해 또는 분리, 송장, 재선적, 재포장 또는 취합, 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변형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그 밖과 같은 물류 공정을 포함할 수 있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에만 적용되며, 제1장(초반적 정의)에 언급된 대로 중미 공화국들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자유지역은 한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 내에 위치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공정은 당사국과 비당사국에 따라 허용되는 환적, 하역, 보관, 화물의 분해 또는 분리, 송장, 재선적, 재포장 또는 취합, 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변형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그 밖과 같은 물류 공정을 포함할 수 있다. 한-이스라엘 FTA 제3.12조 2.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 될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 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 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259p 표	<table><tr><th>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th><th>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th></tr><tr><td>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아세안· 터키· RCEP</td><td>인도·페루·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EU·영국·인도네시아</td></tr></table>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	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아세안· 터키· RCEP	인도·페루·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EU·영국·인도네시아	<table><tr><th>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th><th>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th></tr><tr><td>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아세안·튀르키예·RCEP·이스라엘·캄보디아</td><td>인도·페루·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EU·영국·인도네시아</td></tr></table>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	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아세안·튀르키예·RCEP· 이스라엘·캄보디아	인도·페루·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EU·영국·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추가 **한·중미 특례 불인정 협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										
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아세안· 터키· RCEP	인도·페루·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EU·영국·인도네시아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										
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아세안·튀르키예·RCEP· 이스라엘·캄보디아	인도·페루·캐나다·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EU·영국·인도네시아										
259p 4번째줄	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와의 FTA 및 RCEP에서는 “운송요건”에 제3국에서의 거래제한이 없으므로 제3국 보세전시용품도 운송요건만 충족하면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3국에서 물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인도·페루·캐나다· 콜롬비아·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호주·미국·칠레·EFTA·뉴질랜드· 캄보디아 와의 FTA 및 RCEP에서는 “운송요건”에 제3국에서의 거래제한이 없으므로 제3국 보세전시용품도 운송요건만 충족하면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3국에서 물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인도·페루·캐나다· 콜롬비아·베트남·중국·인도	캄보디아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와의 협정과 단일탁송화물만 제3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는 EU 및 영국과의 FTA는 특혜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네시아와의 협정과 단일탁송화물만 제3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는 EU 및 영국과의 FTA는 특혜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259p 12번째 줄	터키와 FTA에서도 별도 조항을 두어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원산지 물품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협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튀르키예·이스라엘(75)과의 FTA에서는 단일 탁송화물만 제3국 경유를 허용하나, 별도 조항을 두어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원산지 물품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FTA는 직접운송 규정에서 단일탁송화물에 대해서만 경유환적을 인정하여, 제3국에서 거래·소비도 금지하고 있으나, 제3국 보세전시용품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음	이스라엘 FTA 추가 및 문구 수정
260p 13번째 줄	한-터키 FTA는 운송요건에서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서 경유·환적을 인정하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튀르키예· 이스라엘 과 FTA는 운송요건에서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서 경유·환적을 인정하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추가
261p 9번째줄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이 전시되었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한-튀르키예 FTA에서는 필요한 경우 제품이 전시되었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내용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61p 14번째 줄	아세안·터키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은 거의 동일하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적용범위가 외국물품 판매목적의 모든 무역으로 제한이 없으나 한-터키 FTA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는 제외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	아세안·튀르키예· 이스라엘 과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은 거의 동일하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적용범위가 외국물품 판매목적의 모든 무역으로 제한이 없으나 튀르키예· 이스라엘 과 FTA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는 제외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	이스라엘 추가
261p 표	터키 제14조 제14조 전시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그리고 -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 원산지 증명서는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 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이 전시되었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제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한, 상점 또는 사업장내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된다.	튀르키예 제14조 제14조 전시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그리고 -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 원산지 증명서는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 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이 전시되었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제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한, 상점 또는 사업장내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된다. 이스라엘 제3.14조	이스라엘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제3.14조 전시회 1. 한국 또는 이스라엘 외의 비당사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이 협정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한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으로 운송하고, 그 상품을 그 비당사국에서 전시한 사실 나. 상품이 그 수출자에 의하여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인에게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사실 다.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비당사국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운송된 사실, 그리고 라.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시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2. 원산지 증명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거나 작성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 증명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제1항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상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된다.	